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49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 백혜련·조정식·염태영

조인철 • 이광희 • 허성무

박성준 • 민병덕 • 김한규

김태년 · 김기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 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상 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아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대금 관련 예치의무를 도입하 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의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신탁
- 2. 예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재화등의 대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 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

하여야 한다.

-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 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 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①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 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을 분

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재화등의 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 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을 "제20조의3, 제20 조의4,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5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등의 대금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 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 략)	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②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	
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	
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	
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	
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	
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	
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	<u><삭 제></u>
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생 략) ③ ~ ⑤ (생 략) <u><신 설></u>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의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

- (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 야 한다.
- 1. 신탁
- 2. 예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따른 지급보증보험계약의 체 결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 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 입한 재화등의 대금을 직접 운 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 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 용하여야 한다.
-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 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

- 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

 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별도관리하여야한다.
- ①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

 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

 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 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 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 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 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재화등의 대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재화등의 대금 관리 상황 점검 방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 삭 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 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한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 약
-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보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②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식, 그 밖에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할 때 소비자가 제13조제2항제 10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 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 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 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3.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른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u>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u> <u>래</u>

-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거래
-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 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 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하 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 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준용한다.
- ⑩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 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 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 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 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 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 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 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 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 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로 본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의,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 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 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 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 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 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

1.	
	<u>제20조의3, 제20</u>
	조의4,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항, 제27조제2항
2	(현행과 같음)
	(원정의 월급) ~ ④ (현행과 같음)
4142	조(벌칙)
1.	(현행과 같음)
<	<u>삭 제></u>

한 자

제45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 3.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 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 | <삭 제> 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7항 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 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을 체결한 자
- 6.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 | <삭 제> 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 제7항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 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제45조(과태료) ① · ② (현행 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